

의안번호	제 24 호
의 결 연 월 일	2010년 9월 일 (제294회)

**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발 의 자	박문희의원외 6명
발의연월일	2010년 8월 25일

##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4
----------	----

발의연월일 : 2010년 8월 일  
발 의 자 : 박문희, 김도경, 김영주  
김양희, 김재종, 이광희  
장병학

### 1. 제안이유

- 민선 제5기 출범에 따라 단행한 충청북도 조직개편에서 변경된 위원회별 소관부서 명칭을 반영하고자 함.

### 2. 주요골자

- 각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명칭 재 조정(안 제3조)
  - . 보건복지여성국 ⇒ 보건복지국(안 제3조제2호 가목)
  - . 문화관광환경국 ⇒ 문화여성환경국(안 제3조제3호 가목)
  - . 균형발전국·건설방재국 ⇒ 균형건설국(안 제3조제5호 가목)

### 3. 개정조례안 : 별첨

### 4. 신구조문대비표 : 별첨

### 5. 참고자료

- 관계법령 : 별첨
-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규제관련사항 : 해당없음
- 입법예고 여부 : 해당없음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“보건복지여성국”을 “보건복지국”으로, 제3호 중 “문화관광환경국”을 “문화여성환경국”으로, 제5호 중 “균형발전국, 건설방재국”을 “균형건설국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 1. (생략) 2. 정책복지위원회 가..... <u>보건복지여성국</u> 3. 행정문화위원회 가..... <u>문화관광환경국</u> 5. 건설소방위원회 가. <u>균형발전국, 건설방재국</u> ,.....	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 1. (현행과 같음) 2. 정책복지위원회 가..... <u>보건복지국</u> 3. 행정문화위원회 가..... <u>문화여성환경국</u> 5. 건설소방위원회 가. <u>균형건설국</u> ,.....

## 관 계 법 령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56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가지로 한다.

제58조(위원회의 권한)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.

제112조 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